



제262회 임시회
2007. 7. 12 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6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7월 4일

3. 제안이유

○ 도로법시행령의 정액제 「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」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「도로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인상

-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도로점용료의 현실화

- 평균 38%인상

○ 점용료 산정기준 중 "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, 점용물의 길이,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." 를 삭제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나

○ 1993년이후 조정되지 않은 도로점용료의 평균인상율이 38%인 점을 감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바임.